

**제 2423호**  
2016. 01. 0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제2016-1호 :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 2  
제2016-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9
- **공 고**  
제2015-9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  
제2016-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1호

###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32호(2007.05.2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8호(2010.12.1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2-75호(2012.08.01.),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2-110호(2012.12.05.),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4-13호(2014.02.19.),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4-110호(2014.12.17.),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5-83호(2015.10.21.) 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5-116호(2015.12.30.) 로 사업시행 인가(변경)된 우리구 을지로2가 88-5 일원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3)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8-5번지 일대(변경없음)
- 다. 시행면적 : 기정 - 2,173.2㎡(대지 1,978.4㎡, 정비기반시설 194.8㎡)  
                  변경 - 2,174.4㎡(대지 1,978.0㎡, 정비기반시설 196.4㎡)
- 라. 사업기간 : 2012. 8. 1 ~ 2016. 3. 31(변경없음)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센트럴장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해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12층)
-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6년 1월 6일
- 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층) (지상/지하)	높이 (m)	용도	비고
기정	1,978.4	1,113.82	56.30	31,142.60	992.30	22/7	99.7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변경	1,978.0	1,151.94	58.24	30,833.48	992.25	22/7	99.6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측량 결과반영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구분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명	주소	토지(㎡)	건물(㎡)	용도	
기정	센트럴장교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12층)	1,978.4	31,142.6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변경	센트럴장교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12층)	1,978.0	30,833.48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환지예정지조서(기정, 변경) 참조

나) 체비지 시설 : 대상없음 (변경없음)

다) 보류지 시설 : 대상없음 (변경없음)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행정청에 무상귀속)(확정예정측량결과 반영)

시설명	기정				변경(확정예정측량결과 반영)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도로 (광로 3-8)	을지로2가 88-20	대	38.0	38.0	을지로2가 나번지	도로	97.7	
	을지로2가 88-21	대	8.2	8.2				
	을지로2가 88-22	대	47.8	47.8				
	을지로2가 88-23	대	3.9	3.9				
	소계		97.9	97.9			97.7	
도로 (소로 2-1)	을지로2가 88-16	대	27.3	27.3	을지로2가 다번지	도로	98.7	
	을지로2가 88-17	대	17.6	17.6				
	을지로2가 88-18	대	12.9	12.9				
	을지로2가 88-19	대	39.1	39.1				
	소계		96.9	96.9			98.7	
계	8필지		194.8	194.8	2필지		196.4	증)1.6㎡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조서(서울시에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 분							비 고 (해수면 기준)
			지적면적 (㎡)	평면 면적 (㎡)	입체면적 (㎡)	길이 (m)	폭(m)	높이(m, 지하)	최 초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지하연결통로]	을지로2가 88-5일대	928.1	177.9	1,108.2	43.0	5.0	31.2~16.8 (해수면 기준)	'77.12.1 (건교제232호)	- 엘리베이터 부분 (16.8m~31.2m)  - 에스컬레이터, 계단부 부분(19.5m~29.9m)  - 연결부 부분 (20.8m~26.6m)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을지로변 출입시설 일부) - 지상 1층 : A=177.9㎡, H = 31.2m~26.6m(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177.9㎡, H = 26.6m~16.8m(해수면기준)									

다)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4)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기 철거완료

5) 변경사유 : 대지 확정예정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사.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장교 제4지구 환지예정지 조서 ] (변경전)

연번	소유자	지번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번	분양예정지 대지 및 건축물								비고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지목			대지지분	위치	구조	용도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1	(주)센트럴 장교	중구 을지로2가 88-1	대	130.2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검사무실	247.95	(주)센트럴 장교	장교동 가번지	대	50.97	B2호	S.R.C.	근생시설	456.09	346.29	802.38		
					철근콘크리트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점포	330.60		장교동 가번지	대	63.18	B1호	S.R.C.	근생시설	565.35	429.25	994.60		
		중구 을지로2가 88-2	대	119.30	철근콘크리트조 함석지붕	점포및사무실	578.51	장교동 가번지	대	22.12	1층호	S.R.C.	근생시설	197.94	150.29	348.23			
		중구 을지로2가 88-3	대	9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495.90	장교동 가번지	대	41.15	2층호	S.R.C.	근생시설	368.23	279.59	647.82			
		중구 을지로2가 88-4	대	191.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128.02	장교동 가번지	대	115.07	3층호	S.R.C.	업무시설	862.44	948.84	1,811.28			
					철근콘크리트조 육옥근지붕	점포및주택	379.41	장교동 가번지	대	105.41	4층호	S.R.C.	업무시설	790.07	869.22	1,659.29			
					철근콘크리트조 육옥근지붕	점포	69.42	장교동 가번지	대	92.05	5층호	S.R.C.	업무시설	689.92	759.04	1,448.96			
					철근콘크리트조 육옥근3계건	점포	59.50	장교동 가번지	대	82.42	6층호	S.R.C.	업무시설	617.74	679.62	1,297.36			
		중구 을지로2가 88-5	대	626.10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7층호	S.R.C.	업무시설	695.88	765.59	1,461.47			
		중구 을지로2가 88-6	대	188.10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8층호	S.R.C.	업무시설	621.48	683.75	1,305.23			
		중구 을지로2가 88-7	대	356.00	철근콘크리트조 스트리트층	점포	333.76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9층호	S.R.C.	업무시설	695.88	765.59	1,461.47			
		중구 을지로2가 88-8	대	214.90	목조와즙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66.64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10층호	S.R.C.	업무시설	621.48	683.75	1,305.23			
					목조와즙 2계건	점포	69.42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11층호	S.R.C.	업무시설	695.88	765.59	1,461.47			
		중구 을지로2가 88-9	대	67.80	연화조 와즙	점포및주택	79.34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12층호	S.R.C.	업무시설	621.48	683.75	1,305.23			
		중구 을지로2가 88-10	대	4.60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13층호	S.R.C.	업무시설	695.88	765.60	1,461.48			
중구 을지로2가 88-12	대	149.10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14층호	S.R.C.	업무시설	621.47	683.73	1,305.20					
중구 을지로2가 88-14	대	36.10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15층호	S.R.C.	업무시설	695.87	765.60	1,461.47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16층호	S.R.C.	업무시설	621.48	683.75	1,305.23					

연번	소유자	지번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번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축물							비고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000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지목	대지지분	위치	구조	용도	전용면적	공유면적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17층호	S.R.C.	업무시설	695.88	765.60	1,461.48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18층호	S.R.C.	업무시설	621.48	683.75	1,305.23	
								장교동 가번지	대	92.84	19층호	S.R.C.	업무시설	695.88	765.60	1,461.48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20층호	S.R.C.	업무시설	621.49	683.75	1,305.24	
								장교동 가번지	대	92.78	21층호	S.R.C.	업무시설	695.40	765.07	1,460.47	
								장교동 가번지	대	82.92	22층호	S.R.C.	업무시설	621.51	683.79	1,305.30	
소 계			2,173.2			2,838.5	소 계		1,978.4				15,086.20	16,056.40	31,142.60		
							서울시 중구	장교동 나번지	도	97.90							
								장교동 다번지	도	96.90							
소 계							소 계		194.8								
총 계			2,173.2			2,838.5	총 계		2,173.2				15,086.20	16,056.40	31,142.60		



연번	소유자	지번	총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번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축물							비 고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지목	대지지분	위치	구조	용도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17		중구 을지로2가 88-10	대	0.70															
18		중구 을지로2가 88-23	대	3.90															
19		중구 을지로2가 88-12	대	149.10															
20		중구 을지로2가 88-14	대	36.10															
소 계				2,173.20				2,838.47	소 계			1,978.00				16,978.17	13,855.31	30,833.48	
확정에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2,174.40					서울시 장교동 나번지	도	97.70								
									서울시 중구 장교동 다번지	도	98.70								
									소 계		196.40								
총 계				2,174.40				2,838.47	총 계			2,174.40				16,978.17	13,855.31	30,833.48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 분			비 고 (해수면 기준)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입체면적 (㎡)	길이 (m)	폭 (m)	높이 (m, 지하)	최초 결정일									
철도		도시 철도 (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지하연결 통로]	을지로 2가 88-5 일대	928.1	177.9	1,108.20	43.0	5.0	31.2~16.8 (해수면기준)	'77.12.1 (건고 제232호)	- 엘리베이터부분 H=16.8m~31.2m - 에스컬레이터, 계단부부분 H=19.5m~29.9m								
세부사항		○ 입체적결정범위(을지로변출입시설일부) - 지상 1층 : A=177.9㎡, H=31.2m~26.6m(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177.9㎡, H=26.6m~16.8m(해수면기준)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 - 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16외 1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10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16	2010.06.28.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8-5외 19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2010.04.19.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도로명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1.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 913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5년부터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되었기에 현행수준의 세입징수 포상금  
유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

####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세무1과, 전화 : 3396-5102, FAX : 3396-8695,  
E-mail : lss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제2조(지급대상) ① ----- ----- -----.  1. -----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 - 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 제정이유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제정안

조항	제 정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제3조~제4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제6조	구청장의 책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제7조	공정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제8조~제9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제10조~제12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관계의공정성 확보 등
제13조~제14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제15조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3396-4442)

E-mail : seed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3396-44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및 위탁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3.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①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①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평가) ①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한다.

제14조(의견수렴) ①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③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관할구역에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